

## 북미주 개혁신교회 한인총회/컨퍼런스 기존 정관과 개정안(영문 포함)

기존 정관	개정 정관	Revised Bylaws English
<p>제 1 장: 명칭</p> <p>제 1 조: 회의 명칭</p> <p>본회는 북미주개혁신교회 한인교회협의회(The Korean Council of CRCNA)라 칭한다.</p>	<p>제 1 장: 명칭</p> <p>본회는 “북미주 개혁신교회 한인목회자 협의회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KMA)”로 칭한다. (이하 본회)</p> <p>[정관보칙 1 장 참조].</p>	<p>ARTICLE 1. NAME</p> <p>The name of this body shall be the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p> <p>(The official acronym of the entity shall be “KMA”)</p> <p>[Ref. Supplement Article I.]</p>
<p>제 2 장: 목적</p> <p>제 2 조: 회의 특징</p> <p>본회의 목적은 북미주개혁신교회의 비전과 사명선언문 및 사역의 핵심가치를 존중하고 지역협의회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데 있다.</p>	<p>제 2 장: 목적</p> <p>본회는 북미주 개혁신교회(CRCNA)에 속한 한인 목회자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노회와 지역 교회 발전에 기여하며, 교단과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p> <p>[정관보칙 2 장 참조].</p>	<p>ARTICLE II: PURPOSE</p> <p>This body aims to strengthen the bond between ethnic-Korean ministers in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RCNA), and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renewal of the local churches and classes. In addition, this body will serve to help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in the greater denomination.</p> <p>[Ref. Supplement Article II]</p>
	<p>제 3 장: 본회 사무소</p> <p>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p> <p>[정관보칙 3 장 참조].</p>	<p>ARTICLE III: OFFICE</p> <p>The official office of the body shall be located at a location designated by the President.</p> <p>[Ref. Supp. Art. III].</p>
<p>제 3 장: 회원 및 임원</p> <p>제 3 조: 회원구성</p> <p>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p> <p>(1) 정회원: 본 교단 소속된 목사와 지 교회 대표 각 1 인으로 구성한다</p> <p>준회원: 본 교단 가입 수속 중인 목사와 지교회 대표로 한다.</p>	<p>제 4 장: 회원 구성</p> <p>본회의 회원은 본 교단 한인 목회자(은퇴 목사, 교단 사역자, 전도목사, 채플린, Loan Pastor 및 해외 선교사 포함)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본 교단 가입을 원하는 목회자들과 본회 회원의 배우자는 본회의 각종 회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관자로 참석할 수 있다.</li> </ul>	<p>Article IV: Membership</p> <p>Each Voting Member shall be an Ordained Minister of the Word (including Retired Minister or Commissioned Pastor) in good-standing, actively serving a Christian Reformed congregation (or on-loan via Article 13, with credentials being supervised by an active Christian Reformed congreg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nual Gatherings and Continuing Education Opportunities will be open to Ministers’ Spouses, and Ministers looking to affiliate with the Christian</li> </ul>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p>제 4 장: 임원구성</p> <p>본회의 원활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p> <p>(1) 임원: 회장 1 인, 부회장 1 인, 총무 1 인, 서기 1 인, 부서기 1 인, 회계 1 인, 부회계 1 인, 감사 2 인</p> <p>(2) 협동총무: 각 지역 협의회 대표 1 인</p> <p>(3) 임원의 자격: 본 회 임원중 회장, 부회장 및 총무는 본 교단 가입 5 년 이상인 자로 하고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및 감사는 본 교단 가입 3 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단 협동총무는 지역 협의회에서 추인된 자로 한다)</p> <p>(4)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한번 연임할 수 있다.</p> <p>(5) 본 회의 목적의 바른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특별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p>	<p>제 5 장: 본회 조직</p> <p>본회는 운영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이를 돕는 특별위원회를 둔다.</p> <p>1 조. 운영위원회</p> <p>(1) 구성요건: 각 지역 대표, 한인노회 서기, 한인사역리더, 2 세 목회자 대표, 특수목회자 대표 그리고 필요시 회장과 한인사역리더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정관 보칙 5 장 참조]</p> <p>(2) 임원선출: 운영위원회 위원장 (KMA 회장)과 총무는 공천 위원회가 공천하고 총회/컨퍼런스의 인준을 받는다. 기타 임원 (서기와 회계)은 신임 위원장(회장)이 선임한다.</p> <p>(3) 운영위원회의 기능: 총회/컨퍼런스에서 위임된 결의사항과 비 회기중 본회 목적에 근거한 모든 사역을 집행하고 총회/컨퍼런스의 추인을 받는다.</p> <p>2 조. 특별위원회</p> <p>운영위원회가 특별한 사역(선교, 출판, 등)을 이루기 위해</p>	<p>Article V: STRUCTURE</p> <p>This body will be led by the Steering Committee with support from Task Force Teams on a need-basis.</p> <p>1. Steering Committee</p> <p>(1) The SC wi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Each Designated Region, Stated Clerks of Korean-speaking Classes, Representative of the Second Generation Ministers, Representative of Specialized Ministers, and if necessary, those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and the Korean Ministry Leader [Ref. Supp. Art. V].</p> <p>(2) Election of Executive Officers: The Executive Chair of the SC (President) and Secretary will be nominated by the Nominating Committee and approved at the Annual Conference. Other officers (Clerk, Treasurer) will be appointed by the new Executive Chair (President)</p> <p>(3) Func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To execute the mandate, purpose and ministries set by the Annual Conference, and to serve on behalf of the Annual Conference</p> <p>2. Task Force Teams:</p> <p>The Steering Committee may form Specialized Committees to accomplish the set mandates (Missions, Publishing, etc.). In addition, the Steering Committee may delegate Task Force Teams</p>

	<p>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Task Force Team(TFT)을 구성하여 위원회가 승인한 사역(각종 행사, 교육, 긴급상황 이행)을 집행하게 하며 운영위원회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한다.</p>	<p>(TFT) to execute set tasks (such as events, continuing education opportunities, emergency situations) while reporting to the Steering Committee</p>
<p>제 5 장: 임원 및 위원 선거 제 5 조: 임원선거</p> <p>(1) 본 회의 임원의 정, 부회장 및 총무는 공천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출석 과반수로 선출하며, 공천위원은 현 회장의 지명으로 하되 전 회장 1 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p> <p>(2) 감사 및 정, 부서기와 부회계는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p> <p>제 6 조: 임원 결원시 총원 본 회의 임원의 결원 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 7 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p> <p>(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p> <p>(3) 총무는 본 회의 사업을 관할한다</p> <p>(4) 서기는 본 회의 회의진행을 기록하고</p>	<p>제 6 장: 위원회 임원 선출과 임기</p> <p>1 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회장), 총무, 서기, 회계 4 인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p> <p>2 조. 위원장(회장)과 총무는 공천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와 과반수 출석으로 지명하고 총회/컨퍼런스가 인준한다.</p> <p>3 조. 공천위원회는 현 회장을 포함한 총회/컨퍼런스에 참석 가능한 운영위원 중 5 명을 운영위 내에서 투표로 정한다.</p> <p>4 조. 임원의 결원시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p> <p>5 조. 임원의 직무</p> <p>(1) 위원장(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총회/컨퍼런스, 운영위원회 등)를 소집하고 진행한다.</p> <p>(2) 총무는 위원장(회장) 유고시 대행하며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모든 사항을 실행한다.</p>	<p>ARTICLE VI. OFFICERS' ELECTION AND TERMS</p> <p>1. The Executive Offic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President, Secretary, Clerk, and Treasurer (4). The term of the officers is one year, once renewable.</p> <p>2. The President and Secretary will be nominated by an anonymous vote with a simple majority from the Nominating Committee with a final approval coming from the Annual Conference.</p> <p>3. The Nominating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current President, and members in attendance from the Steering Committee (designated by vote within the S.C.) (Total 5 members)</p> <p>4. In the event of a vacancy of an Executive Officer, the Steering Committee will have the authority to nominate a member to complete the set term.</p> <p>5. Executive Team Responsibilities:</p> <p>(1) The chair (President) will represent the body and conduct and lead the meetings (Steering Committee, Annual Conference)</p> <p>(2) The Secretary will act on behalf of the chair (President) in the case of his/her absence and implement all matters</p>

<p>재반 서류를 정리 보관한다</p> <p>(5) 회계는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p> <p>(6) 회계는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p> <p>(7)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고 회계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8) 감사는 본 회의 모든 재정 출납을 감독한다</p> <p>협동총무는 본회와 각 지역협의회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역을 담당한다</p>	<p>(3) 서기는 모든 회의를 기록하고 문서 보존을 담당한다.</p> <p>(4) 회계는 모든 재정사항을 관리하고 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p>	<p>resolved by the Steering Committee.</p> <p>(3) The Clerk records all meetings and is responsible for document preservation.</p> <p>(4) The Treasurer manages all financial matters of the body and reports to the Steering Committee and the Annual Conference.</p>
<p>제 6 장: 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제 9 조: 각 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p> <p>본 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와 지역협의회를 둔다</p> <p>(1) 위원회: 정책위원회, 목회연구위원회, 선교위원회, 구제위원회, 출판위원회, 장학위원회</p> <p>지역협의회: 동부지역협의회, 중서부지역협의회, 서북부지역협의회, 남가주지역협의회, 중남부지역협의회</p>		
<p>제 7 장: 회의 제 9 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p> <p>(1) 정기총회: 매년 5 월 셋째 주간에 회장이</p>	<p>제 7 장: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p> <p>1 조. 정기 총회/컨퍼런스 매년 1 회로 모이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총회/컨퍼런스는</p>	<p>ARTICLE VII. MEETINGS The body will have meetings as follows:</p> <p>1. Annual Conference: it will meet once a year, pending any extraneous circumstances. The Steering Committee will set the</p>

<p>소집하여 본 회의 현안문제와 각 지역협의회에서 상정한 안건들을 다루고 임원을 선출한다. 단 총회 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p> <p>(2) 임시총회: 3 가지 이상 중요한 현안문제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시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거나 정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1 개월 전에 공고한다</p> <p>(3) 임원회 및 위원회: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p> <p>(4) 임원 및 각 지역협의회 대표 합동 연석회의: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p>	<p>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들을 다룬다.</p> <p>2 조. 운영위원회 격월로 모이되 긴급시 회장이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은 긴급 모임을 원할시 3 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p> <p>3 조. 특별 위원회 각 위원회 별로 필요시 각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모임을 갖는다.</p>	<p>agenda for the Annual Conference.</p> <p>2. The Steering Committee: it will meet once a month, but may be convened separately by the President in the case of an emergency. If an emergency meeting is desired, a Steering Committee member may submit a proposal to the President with support from three additional members.</p> <p>3. Specialized Committees and Task Force Teams: Each Specialized Committees or Task Force Teams will convene whenever the chair of that set committee or TFT calls for a meeting.</p>
<p>제 8 장: 재정 제 10 조: 재정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을 회원 교회의 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p> <p>제 11 조: 회원의 회비 본 회의 회비는 출석교인 50 명 미만인 교회는 \$100, 50 명 이상인 교회는 \$200 로 한다.</p> <p>제 12 조: 회비 결정 본 회의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p>	<p>제 8 장: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찬조비 등으로 한다.</p> <p>1 조. 회원의 회비 본회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한다</p> <p>2 조. 찬조비 회원이 소속된 지역교회 (노회 포함) 혹은 기타 단체들로부터 찬조비를 받을 수 있다.</p>	<p>ARTICLE VIII. FINANCE The finances of the body will be made up of membership dues and outside support</p> <p>1. Member Dues: All members who have joined this body will pay the annual dues set by the Steering Committee for that year</p> <p>2. Subsidy: The body may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churches (or classes) or other ministries the members may belong to.</p>
<p>제 9 장: 회칙개정 제 13 조: 회칙개정 방식</p>	<p>제 9 장: 정관개정 및 발효</p> <p>1 조. 본회의 정관개정은 운영위원회가총회에 상정한 개정안을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p>	<p>ARTICLE IX. REVISION OF BYLAWS</p> <p>1. Any revision of the set by laws for the body will be carried out with consent of the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p>

<p>본 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총대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p> <p>제 14 조: 회칙개정 요구 회칙개정을 요구할 때는 정회원 15 인 이상의 서명을 얻어 총회 개회 2 개월 전에 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p>	<p>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회원은 본인이 속한 지역 대표를 통해서 정관 개정을 발의 할 수 있다). 개정된 정관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p> <p>2 조. 본회 정관의 미비점은 본 교단의 통상 회의법에 따른다.</p>	<p>Annual Conference, given any proposals that are submitted by the Steering Committee (Members can propose amendments to the bylaws through their Regional Representatives to which they belong to).</p> <p>2. The Annual Conference and any gatherings of this body will adhere to Robert’s Rules and the Church Order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RCNA)</p>
<p>제 10 장: 부칙</p> <p>제 15 조: 회칙 외의 상황 회칙의 미비한 점은 본 교단의 통상 회의 법에 준한다</p> <p>제 16 조: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p>	<p>제 10 장: 정관보칙의 제정 본회 정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시 운영위원회는 정관 보칙을 계속적으로 개정 및 추가할 수 있다.</p>	<p>ARTICLE X. Enactment of Supplements In order to help understand the bylaws, the Steering Committee may continuously revise and add supplementary provisions as necessary.</p>

정관보칙: Supplements

제 1 장:

“한인 목회자”는 본 교단 교회헌법에 명시된 대로 말씀 사역자로서 교단내 사역부서 사역자, 선교사, 채플린, 안수받은 전도목사, 그리고 은퇴목사 등을 포함해 지칭한다.

Article I:

“Ethnic-Korean Minister” means according to Church Order, anyone ordained as Minister of the Word, serving in an active ministry capacity (including but not excluded to missions, denominational staff, chaplaincy, commissioned pastor, retired minister).

제 2 장:

본회 목적에 대한 부가설명은 다음과 같다.

본회는 본 교단인 북미주 개혁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존중하며 부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 한인 말씀 사역자들과 전도목사를 위한 연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 한인 교회에게 연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 본 교단내 130 여 개의 한인교회를 위하여 교단 사무총장실(Office of the General Secretary) 및 총회 사무국(Synodical Services Office)과의 연결사역을 담당하는, 레조네이트 글로벌 선교부 내 한인 사역 리더를 후원하며;

- 1 세와 2 세 한인 직분자들(말씀 사역자, 전도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간의 교제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며;
- 본 교단 안에 있는 한미, 한캐나다, 그리고 한인 입양 직분자들간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것에 있다.

Article II:

The additional explanation of the Article II:Purpose is as follows:

The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RCNA) exists to honor the vision and mission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RCNA). The K.M.A. in addition serves to

- Provide continuing education opportunities for Korean-speaking Ministers of the Word, and Commissioned Pastors;
- Provide continuing education opportunities for Korean-speaking congregations;
- Provide support to the Korean Ministry Leader (KML) of Resonate Global Mission, who serves as liaison to the General Secretary and Synodical Office for the 130+ Korean-language congregations;
- Provides space for fellowship and enrichment among first and second generation ethnic-Korean Office Bearers (Ministers of the Word, Commissioned Pastors, Elders, Deacons);
- Provide space and serve as a bridge for Korean-American, Korean-Canadian, Korean-Adoptee Office Bearers in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CRCNA).

제 3 장.

본회 사무실의 실무적 소재지는 매년 변경되는 회장 임기를 감안하여 회장이 지명한 영구적 건물을 소유한 본회 회원 교회 (교단)의 주소로 한다.

ARTICLE III:

The official office of the body may change every year based on the President's Term; therefore the legal address for this entity will be set to an organized congregation within the denomination.

제 5 장.

1. 한인노회는 교단 총회가 인준하는 대로 그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2. 각 지역대표: 지역의 설정 증감은 교단 총회의 결정과 한인사역리더 KML 의 조언을 참고하여 정한다.
3. (1) 2 세 목회자 대표와 특수목회자 대표의 선정: 운영 위원장과 한인사역리더의 협의로 선정한다.  
(2) 특수목회자의 의미: 기관 목회자 및 군목 등을 말한다.

ARTICLE V

1. "Korean-Speaking Classes" may increase beyond the set number of classes from the Acts of Synod.
2. Regional Representatives: will actively serve to provide periodic updates on what is going on within that region, serve as liaison to the greater denomination and will be selected by the Korean Ministry Leader and the President
3. (1) The Representatives of the Second Generation Ministers and Specialized Ministers Selection Process: will be done by the President and the Korean Ministry Leader.  
(2) Specialized Ministers: includes chaplaincy, denominational staff, and other non-parish ministries.

-----  
이 개정안은 정관개정 TASK FORCE TEAM 에서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2023 년 10 월 19 일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이다.

This revision was submitted by the Bylaws Revision Task Force Team, and the Steering Committee amended and adopted the final revision on Oct 19, 2023.